

공정위, 우버-DH(배민) 기업결합 사전 심사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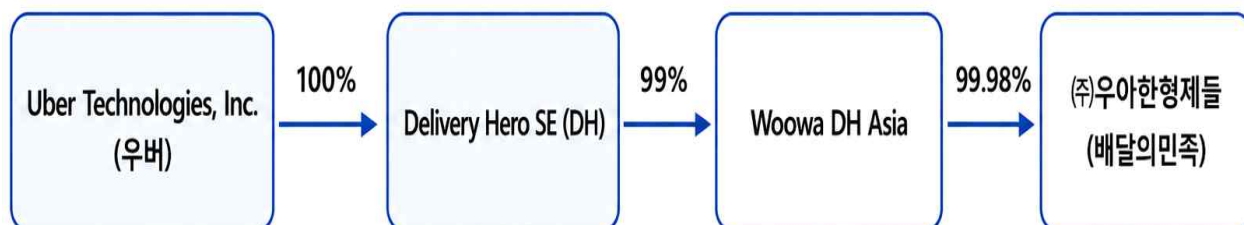
- 우버는 DH 주식 전부 취득(공개매수)을 통해 배달의민족 지배 예정 -
-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(우버 택시) - 배달 플랫폼 사업자(배민) 간 결합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‘공정위’)는 2026년 9월 22일(화) 미국 Uber Technologies, Inc(이하 ‘우버’)가 독일 Delivery Hero Se(이하 ‘DH’)의 주식 전부를 취득(공개매수)*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** 신청서를 접수하고, 심사를 개시하였다.

*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, '26년 11월 인수 청약 완료 후(50%+1주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함)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'27년 하반기 주식취득 완료 예정

** 사전 심사(임의적):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 (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),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임

< 본 건 기업결합 이후 지분구조 >



DH는 현재 ‘배달의민족’을 운영하고 있는 (주)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* 하고 있다. 그에 따라, 국내에서 ‘우버 택시(Uber Taxi)’를 통한 택시 호출 플랫폼**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***인 ‘배달의민족’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.

* DH는 자회사인 Woowa DH Asia를 통해 (주)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음

** ('26년 2월 MAU) 1위 카카오모빌리티(1,358만), 2위 우버(65만)

*** ('26년 4월 MAU) 1위 배달의민족(2,340만), 2위 쿠팡이츠(1,315만), 3위 요기요(421만)

본 건 기업결합은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.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‘배달의 민족’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택시 호출·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·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. 우버 또한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(cross-platform engagement) 확대, 가맹점 대상 광고·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.

이에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,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,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,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	책임자	과 장	장주연 (044-200-5087)
		담당자	사무관	박용택 (044-200-5089)

